#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산림법 제30조"를 "산림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 "충청북도에 설치된 모든"을 "충청북도에서 조성.운영하는"으로 한다.

제7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령산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조령산휴양림 입구에서 조령삼관문 구간의 산책로를 단순 통과하는 자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원)

| 시 설 명 | 구 분 | 사용기간 | 요 금 | 비 고 |
|---|---|---|---|---|
| 주 차 료 | 소, 중형차량 (승용, 봉고차) | 1대/1일 | 2,000 | ※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 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추가요금 징수 |
| | 대형차량 (버스, 화물차) | | 4,000 | |
| 숲속의집 | 4인용 | 1동/1일 | 30,000 | |
| | 5-8인용 | | 40,000 | |
| 캠프화이어장 | | 1회사용 | 20,000 | 앰프시설 포함 |
| 오토캠프장 | | 개소/1일 | 4,000 | 주차 및 야영 4-5인용 텐트1조 |
| 야 영 장 | | 개소/1일 | 2,000 | 야영 4-5인용 텐트1조 |
| 정 자 | 소형(2평미만) | 개소/1일 | 2,000 | |
| | 대형(2평이상) | | 5,000 | |
| 평 상 | 소형(2평미만) | 개소/1일 | 1,000 | |
| | 대형(2평이상) | | 2,000 | |
| 사계절 썰매장 | 어린이 | | 3,000 | 썰매대여 포함 |
| | 청소년, 군인 | | 4,000 | |
| | 일반 | | 5,000 | |
| 단 체 숙 소 | | 1동/1일 | 100,000 | |
| 샤 워 장 | 어른 | 1회사용 | 500 | ※ 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 |
| | 학생 | | 300 | |